|  |  |  |
| --- | --- | --- |
|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2019]1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고 소형박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월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10만위안포함)인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25%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100만위안 제외) ~ 300만위안의 부분은 50%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위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300만위안 불초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 자산총액 5,000만위안 불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한다.  종업원 수는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기업이 노무파견 형태로 사용하는 노무판견직 근로자 인원수를 포함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지표는 기업의 전년도(全年度)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별 평균치 = (분기 초 수치 + 분기 말 수치) ÷ 2  전년도(全年度) 분기 평균치 = 전년도(全年度) 분기별 평균치의 합 ÷ 4  연중에 개업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한 경우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한 납세연도로 간주하여 상기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3.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50%의 세액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과 거시적 관리의 수요에 따라 확정한다.  4. 증치세소규모납세자가 법에 의거하여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기타 혜택을 이미 누린 경우에도 이 통지 제3조에 규정된 세제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5. <재정부•세무총국의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의 개인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8]55호) 제2조 제(1)호의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 인정조건 중의 '종업원 수 200명 불초과'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로 조정하고 '자산총액 및 연간 판매수입 모두 3,000만위안 불초과'를 '자산총액 및 연간 판매수입 모두 5,000만위안 불초과'로 조정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투자는 그 투자기간이 2년에 도달하였고 이 통지의 규정과 재세[2018]55호 문건에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재세[2018]55 문건에 규정된 조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투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투자기간이 2년에 도달하였고 이 통지의 규정과 재세[2018]55호 문건에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재세[2018]55 문건에 규정된 조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이 통지의 집행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7]76호),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 범위 진일보 확장에 관한 통지>(재세[2018]7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7. 각 급 재정•세무부서는 정치적 인식을 확실히 제고하고 당중앙•국무원의 제세공과금 인하에 관한 결정과 계획을 심도있게 관철하며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 실행의 주체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여 조직과 지도에 대한 강화, 치밀한 계획을 통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행 방식을 혁신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세무 처리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와 납부자들이 제세공과금 인하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 집행 상황를 긴밀히 추적하고 조사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문제점과 의견, 건의사항을 지체없이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1월 17일 |  | **财政部、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  财税〔2019〕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进一步支持小微企业发展，现就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有关事项通知如下：  　　一、对月销售额10万元以下（含本数）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  　　二、对小型微利企业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减按25%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对年应纳税所得额超过100万元但不超过300万元的部分，减按50%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上述小型微利企业是指从事国家非限制和禁止行业，且同时符合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300万元、从业人数不超过300人、资产总额不超过5000万元等三个条件的企业。  　　从业人数，包括与企业建立劳动关系的职工人数和企业接受的劳务派遣用工人数。所称从业人数和资产总额指标，应按企业全年的季度平均值确定。具体计算公式如下：  　　季度平均值＝（季初值＋季末值）÷2  　　全年季度平均值＝全年各季度平均值之和÷4  　　年度中间开业或者终止经营活动的，以其实际经营期作为一个纳税年度确定上述相关指标。  　　三、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以及宏观调控需要确定，对增值税小规模纳税人可以在50%的税额幅度内减征资源税、城市维护建设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印花税（不含证券交易印花税）、耕地占用税和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四、增值税小规模纳税人已依法享受资源税、城市维护建设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印花税、耕地占用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其他优惠政策的，可叠加享受本通知第三条规定的优惠政策。  　　五、《财政部 税务总局关于创业投资企业和天使投资个人有关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8〕55号）第二条第（一）项关于初创科技型企业条件中的“从业人数不超过200人”调整为“从业人数不超过300人”，“资产总额和年销售收入均不超过3000万元”调整为“资产总额和年销售收入均不超过5000万元”。  　　2019年1月1日至2021年12月31日期间发生的投资，投资满2年且符合本通知规定和财税〔2018〕55号文件规定的其他条件的，可以适用财税〔2018〕55号文件规定的税收政策。  　　2019年1月1日前2年内发生的投资，自2019年1月1日起投资满2年且符合本通知规定和财税〔2018〕55号文件规定的其他条件的，可以适用财税〔2018〕55号文件规定的税收政策。  　　六、本通知执行期限为2019年1月1日至2021年12月31日。《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小微企业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7〕76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进一步扩大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范围的通知》（财税〔2018〕77号）同时废止。  　　七、各级财税部门要切实提高政治站位，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减税降费的决策部署，充分认识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的重要意义，切实承担起抓落实的主体责任，将其作为一项重大任务，加强组织领导，精心筹划部署，不折不扣落实到位。要加大力度、创新方式，强化宣传辅导，优化纳税服务，增进办税便利，确保纳税人和缴费人实打实享受到减税降费的政策红利。要密切跟踪政策执行情况，加强调查研究，对政策执行中各方反映的突出问题和意见建议，要及时向财政部和税务总局反馈。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1月17日 |